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4. 28.(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4차, 제1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전파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2021-16-056)**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전파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파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전파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CBS춘천FM방송국을 운영한 (재)기독교방송에 대해 과징금 부과(안)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반 사업자는 (재)기독교방송이고, 과징금 부과(안)는 126만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파법 제71조 등에 따른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방송국을 운영한 (재)기독교방송에 대하여 전파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동년 12월 16일까지 (재)기독교방송 CBS춘천FM방송국은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전파법 위반사업자인 (재)기독교방송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재)기독교방송은 4월 12일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전파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방송국의 안테나 공급전력이 1.5kW 이상인 경우 총 3인 이상의 무선종사자를 방송국에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파법 제72조 등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운용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전파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용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기독교방송 CBS춘천FM

방송국의 전파법 위반사항입니다. CBS춘천FM방송국은 안테나공급전력 3kW로서, 3인 이상의 무선종사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으나,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인의 무선종사자를 방송국에 배치하여 무선종사자 정원배치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사업자 의견입니다. (재)기독교방송은 신입사원의 자격취득 지연에 따라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에 미달하여 방송국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CBS춘천FM방송국이 1995년 개국 이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방송국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을 최초 위반한 것이므로,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과징금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처분(안)입니다.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입니다. CBS춘천FM방송국은 전파법 제71조 등 무선종사자 정원배치 기준 위반한 전파법 제72조제2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제4호에 따라 운용제한 1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1개월의 운용제한이 청취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전파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운용제한에 갈음하는 2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징금의 감경 사유입니다. CBS춘천FM방송국은 1995년 개국 이래 최초로 해당 방송국 무선종사자 정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위반기간 중 청취자 민원이나 방송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현재는 무선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결입니다. 과징금 기준금액을 50% 감경한 1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달 중으로 과징금 부과 통지 및 납부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붙임>으로 과징금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피심인 제출의견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추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 (2021-16-057)**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추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추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아래’ <표>와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고시한다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향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기로 한다입니다. 아래 <표>에서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부분은 볼드로 붉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번 ‘20년 12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요건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 12월 31일에 최초 고시 이후 '21년도 예산사업 공모가 진행된 지자체들의 사업수행 내역을 새로이 확정된 기관·단체로 추가로 고시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12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2월 31일에 동 조항에 따른 신고·삭제 요청기관·단체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1년 3월 17일에는 추가로 여가부 및 지자체 대상으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21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7개 시·도로부터 회신받은 내역을 고시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정·고시된 기관·단체 10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10개의 내용은 앞에 볼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국가 또는 시·도가 삭제지원 사업비를 보조하는 기관·단체 9개소에 국가가 삭제지원 사업비를 보조하는 기관·단체 1개소 해서 총 10개소였는데 이번에 부산시와 인천시와 대전시에서 지방비로만 사업비를 보조하는 기관·단체 3개소를 통지해 와서 그 3개소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 특성상 1년 단위로 수행기관이 갱신됨에 따라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기관·단체의 지정 기간은 '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규정해서 고시하고자 합니다. 4월 30일자로 지정해 주시는 부분을 고시에 관보 게재하고 연말까지는 지자체 수요 등을 조사 후에 다시 재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이나 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에 방통위가 정하는 곳으로도 확대하게 되어서 작년에 10곳을 지정했고, 이번에 3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역별로 신고·삭제기관 수의 편차가 여전히 크고, 심지어 6개 지자체의 경우 신고·삭제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규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지자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에 기관·단체의 지정 기간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입니다. 물론 예산사업의 특성상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8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앞서 다른

기관들도 1년인데 예산사업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2년 또는 3년으로 수행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8개월짜리면 준비하다 보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사업은 기존에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고시할 때는 이 기관·단체가 삭제 지원하는 기관으로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간을 지정 기한으로 삼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4월에 이미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4월 28일자로 의결해 주시면 고시 기간의 지정 기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연말에 재고시 하면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연장되면 그 부분은 반영되어서 연장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 기관들은 8개월인데 보통 다른 기관들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2년, 3년으로 늘려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일단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주고 지원하는 기관·단체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지자체나 아니면 해당 국가기관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사업 수행 주체를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지정 기간은 연말까지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는 부분은 연장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현황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에 있는 것처럼 예산사업의 특성상 1년 단위로 수행기관이 갱신되기 때문에 대부분 갱신이 되겠지만 저희가 미리 알아서 2년, 3년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다른 예산사업도 어느 기간을 지정할 때 꼭 1년 단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래도 국가가 지난번에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적극 시행한 사업인데 꼭 1년 단위로 허가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5분 폐회 】